스포츠기본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, 문화, 환경, 인권, 복지, 정치, 경제,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,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, 스포츠의 다양성,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스포츠"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.
 - 2. "전문스포츠"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(이하

- "선수"라 한다)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.
- 3. "생활스포츠"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.
- 4. "장애인스포츠"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생활스포츠 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.
- 5. "학교스포츠"란 학교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(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6. "스포츠산업"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7. "스포츠클럽"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「스포츠클럽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4조(국민의 권리)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(이하 "스포츠권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(財源)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,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,

-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 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, 청소년,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7조(스포츠 정책 수립·시행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
 - 2.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
 - 3.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을 조성할 것
 - 4.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
 - 5.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
 - 6.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
 - 7. 스포츠의 국제 교류·협력을 증진할 것
- 제8조(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

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
- 2.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
- 3.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·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- 4.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
- 5.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- 6.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정책
- 7.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
- 8. 스포츠 인력의 양성,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9.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·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
- 10. 스포츠 윤리와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11. 스포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
- 12.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
- 13.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
- 14.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

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 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)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·점검,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,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·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,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 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- 제11조(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 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,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2조(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 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3조(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4조(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(이하 이 조에서 "프로스포츠"라 한다)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하고,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- 제15조(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6조(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선 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, 그에 필 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·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7조(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 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18조(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·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 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와 개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 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

조사·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·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스포츠 윤리)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.
- 제21조(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22조(스포츠 환경보호) 스포츠 시설의 설치·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23조(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)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- 제24조(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)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 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

- 츠의 국제교류·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25조(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)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·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·기술·학술·정보·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·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)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)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,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.
 -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3조제7호 및 제16조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

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3항의 "지원위원회"를 "「스포츠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"로 한다.